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단256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영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8,073,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2022. 10.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의 1/2 지분 중 196,344,000분의 19,916,762 지분에 관하여 2022.

9. 2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7. 29. 접수 제2756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1. 접수 제3680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5,800,619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의 1/2 지분 중 36,920,284/196,344,000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D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5.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14.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F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1. 7. 19.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9. 피고 앞으로 2019. 7.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F 임야에 관해서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8. 2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9. 8. 22. 말소되었고 2019. 10. 1. 그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는 2021. 8.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C의 처 G은 2011. 2.

3. 이미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6. 말경 D아파트에 체류하면서 C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임의로 소지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F 임야는 1/2 지분)에 관한 증여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각 증여 서류의 인영이 C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일인 2019. 7. 25. 및 2019. 10. 1. 무렵 C는 병세 악화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F 임야는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F 임야는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서류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각 증여일 무렵 C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7, 8호증의 영상 또는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C의 증여 의사를 확인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예비적 청구 (유류분)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익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얻은 것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그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2) C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

C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① 시가 196,344,000원 상당의 F 임야 1/2 지분, ② 예금 및 수표 73,116,389원(= 국민은행 248,586원 + 우리은행 12,867,803원 + 수표 60,000,000원)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C 사망 당시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합계 269,460,389원이다.

C 사망 당시 소극적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는 E아파트에 관한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E아파트에 관하여 2019. 7.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E아파트에 관하여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E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가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고 기존 임대인인 C는 임대인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C의 상속채무라 할 수는 없다(피고가 승계한 위 채무는 피고의 특별수익액 산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C 사망 당시의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다.

3) 특별수익의 가액

가) C 사망 이전에 피고가 C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① 700,000,000원 상당의 D아파트, ② 464,000,000원(554,000,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9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E아파트, ③ 196,344,000원 상당의 F 임야 1/2 지분인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특별수익 가액은 합계 1,360,344,000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가 배우자 G 사망 후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되면서 F 농장의 임대수입과 참전명예수당이 입금되는 계좌를 원고가 관리하였고 2019. 8.경 피고가 그 관리를 넘겨받았다. 원고가 관리를 시작할 무렵 C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1,836,479원, 국민은행 계좌에는 78,359,281원의 잔액이 있었고 이후 2019. 7.경까지 받았을 F 농장 임대수입과 참전명예수당에서 같은 기간 C를 위하여 지출하였을 생활비 등을 공제하면 2019. 8.경에는 적어도 우리은행 계좌에 35,510,939원, 국민은행 계좌에 86,042,998원 합계 121,553,937원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2019. 8. 7. 기준으로 우리은행 계좌에 64,272,488원, 국민은행 계좌에 6,590원만 남아 있으므로 그 차액 57,274,859원 상당은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9. 8.경의 예금 잔고액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차액의 발생 및 그 차액이 원고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C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무액

0원.

5) 결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2), 3)항의 각 재산가액 합계 1,629,804,389원(= 269,460,389원 + 1,360,344,000원)이다.

다. 원고 유류분 비율(B)

$1/4 (= \text{법정상속분 } 1/2 \times 1/2)$

라. 원고의 유류분액(A×B)

407,451,097원(= 1,629,804,389원 × 1/4, 원 미만 버림)

마. 원고, 피고의 특별수익액(C)

1) 원고: 0원

2) 피고: 1,360,344,000원

바. 원고, 피고의 순상속분액(D)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이하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이때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자의 초과특별수익을, 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2)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가) 위 법리에 따른 산정방법에 위하면 간주상속재산, 법정상속분액, 특별수익과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간주상속재산(a)	법정상속비율(b)	법정상속분액(c=a×b)	특별수익(d)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e=c-d)
원고	1,629,804,389원	1/2	814,902,194.5원	0원	814,902,194.5원
피고				1,360,344,000원	-545,441,805.5원

나) 피고는 초과특별수익자이고, 그 초과특별수익분은 545,441,805.5원이므로,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가 위 초과특별수익분을, 피고를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e)	피고의 초과특별수익(f)	상속비율(g)	안분액(h=f×g)	공제 후 잔액(i=e-h)
원고	814,902,194.5원	545,441,805.5원	1	545,441,805.5원	269,460,389원

다) 상속채무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269,460,389원이 된다.

사.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A \times B - C - D$)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유류분액(A×B)	특별수익액(C)	순상속분액(D)	유류분 부족액 ($A \times B - C - D$)
원고	407,451,097원	0원	269,460,389원	137,990,708원

아. 피고의 반환의무

결국 원고는 C의 적극적 상속재산(총 269,460,389원 상당)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고,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37,990,708원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반환의 방식

1)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2) 안분비율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37,990,708원이고, 피고의 특별수액 재산은 700,000,000원 상당의 D아파트, 464,000,000원 상당의 E아파트, 196,344,000원 상당의 F 임야 1/2 지분 합계 1,360,344,000원이므로 유류분 부족액 중 각 반환할 가액은 아래와 같다.

수증재산	상속당시 가액	재산별 지분비율	원고 유류분부족액	적용 금액
------	---------	-------------	-----------	-------

D아파트	700,000,000원	700,000,000/ 1,360,344,000	137,990,708원	71,006,669원
E아파트	464,000,000원	464,000,000/ 1,360,344,000		47,067,277원
F임야 1/2 지분	196,344,000원	196,344,000/ 1,360,344,000		19,916,762원
합계	1,360,344,000원			137,990,708원

3) 반환의 방법

D아파트와 E아파트에 관해서는 원고가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가액반환을 하고, F 임야 1/2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물반환을 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18,073,946원(= 71,006,669원 + 47,067,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9.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물반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의 1/2 지분 중 19,916,762/196,344,000 지분에 관하여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9. 2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D아파트 I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18층 아파트

1층 313.22㎡

2 내지 18층 각 403.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 부평구 H 대 48,75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58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8756분의 32.61

2.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부평구 K, L, M에 있는 E아파트 N동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629.84㎡

2 내지 5층 각 606.48㎡

지하실 315.4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 북구 K 잡종지 49,970㎡

인천 북구 L 잡종지 1,971㎡

인천 북구 M 구거 4,02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O호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75.81㎡

(대지권의 표시)

각 소유권대지권 55964분의 70.63

3. 인천 부평구 F 임야 432㎡ 끝.

